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80-4415)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6년 3월 일

발 행: 2026년 3월 일

목 차

I. 타 시도 입법 동향

- ①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7
- ② [일부개정]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3
- ③ [전부개정]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21

II.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 ①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7
- ②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III. 입법·정책 현안

- 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33
- ②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36

IV. 해외 법제 동향

- ◇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 41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① 조례에 공무원 대학등록금 지원 규정 가능 여부 47
- ② 공공장사시설에 조화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49
- ③ 공무원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 외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가능 여부 51

VI.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 ① 강제경매절치에 의한 중요재산 매각의 법령상 '중요재산 양도' 해당 여부 57
- ②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정보 범위 61
- ③ 지방의회 의결 예산안 재의 요구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시점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준예산 집행 가능 여부 65

I . 타 시도 입법 동향

I. 타 시도 입법 동향

①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6.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9941호, 2026. 1. 5., 일부개정]

□ 관련 상임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의 금연구역을 실내로 한정하였으나, 해당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실외구역으로 확대 지정

□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키즈카페 시설,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실외구역)
- 학교 내 금연교육 및 홍보의 실효성 제고 (제9조제2항)
 - 실태조사 반영한 금연교육 및 홍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유 / 협력

□ 입법 시사점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은 지자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8항에는 강행규정으로 모든 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를 의무화 하고 있음
- ▲ 현행 도 조례인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와 각 시·군 관계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세부 금연구역 지정대상이 상이한 상황임

- ✓ 이에, 도는 다중이용시설인 키즈카페 및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실내뿐만 아니라 일정 실외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금연단체 및 시민단체 외에 교육청과도 금연 홍보활동을 연계 협력하여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붙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를 따른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며,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과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 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을 모두 포함한다.
4.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2.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3.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4. 삭제

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인 키움센터 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8. 삭제

9.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10.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11.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는 유관 공공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환경조성 등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9941호, 20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부개정]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2. 6.] [충청북도조례 제5546호, 2026. 2. 6., 일부개정]

□ 관련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 개정이유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위원 구성 비율을 규정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

□ 주요내용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제2조)
- 온라인학교 특성을 고려한 위원 구성 비율 신설 (제2조)

□ 입법 시사점

▲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로서 규정된 ‘온라인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일반 국·공립학교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함

▲ (대통령령)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으로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지 않을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강학생과 학부모의 대표성이 결여된 상황임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

다만, 온라인학교 특성상 소속 학생이 없고 과목별로 사이버(원격) 수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은 일반·국공립학교와 달리함

* (일반 국·공립학교)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온라인학교) 100분의 50 이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립 유치원, 학교 및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⑥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온라인학교설립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른 온라인학교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의 위원 연임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삭제 2019. 8. 9.>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6항,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및 온라인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7호, 법 제32조제1항제13호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은 1명 이상의 위원을 통해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4조제5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누리집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 영 제61조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영 제59조의3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삭제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 및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을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 <제5546호,202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전부개정]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4.] [경기도조례 제8868호, 2026. 3. 4., 전부개정]

□ 관련 상임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기존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부족, 종합·체계적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 장해 제대군인: 군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치유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결손이 남은 자,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전직 지원금, 보훈 특별 고용 등 특별 지원 제공
-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지역 정착 및 자립 지원, 제대군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 주요내용

- 경기도 거주 및 정착 희망 제대군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안 제1조, 제5조)
-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정의 신설 / 확대 (안 제2조)
-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해 규정 (안 제6조)

□ 입법 시사점

- ▲ 경기도는 그간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모두를 지원할 수 있게 됨
- ▲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전국 권역별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컨설팅과 교육훈련비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맞춤형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대전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이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사업*을, 접경지역 등에선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음

* 보훈관련 법률상담, 심리상담, 취업상담, 주거안정지원, 정착지원 등

▲ 전북도의 경우 현재 군복무 중인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나 사업은 시행 중에 있으나, 제대군인을 위한 관련 조례를 시행하거나 특정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은 식별하기 어려움

✓ 국가보훈부와 보훈청 및 지청에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 이후 안정적 사회 복귀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년 이탈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검토 필요

붙임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5년 이상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말한다.

2.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급여를 지급하는 사람

3.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대군인과 청년 장애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 등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4.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 등 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 등 당사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 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

또는 취업 교육 훈련 등 취업 및 전직 지원

2.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 창업지원

3. 귀농·귀촌 교육 등 정착 지원

4. 청년 장애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 지원

5. 문화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 환경 조성

6. 그 밖에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 향상, 취업 교육훈련, 창업 교육 등 교육에 참여하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애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시행 중인 사업계획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 위탁계약 또는 예산집행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①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신 설>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신 설>	<p>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u>하여야 하며, <u>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u>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p> <p>③ <u>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 시행령 개정사항 》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 주요 입법 시사점

- ✓ 기존 1월 간 생계비 185만 원 이하 예금 압류 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률임
- ✓ 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기초 생활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하며, 과도한 채무 독촉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에 의의

2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하주차장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
-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춤

□ 주요내용 ※ 시각경보기 설치,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등 관련 별표 개정 생략

현 행	개 정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본문 생략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 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본문 생략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의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별표 10] (시행 2025.8.28.)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별표 10] (시행 2025.12.1.)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에 따른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 2)는 1)의 예외 규정으로 생략

□ 주요 입법 시사점

- ✓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본격 시행, '25년 12월 1일부터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됨
 - * 공동주택 발생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 강화 위해 도입
- ✓ 그간 세대 점검은 사유공간 특성과 거주자 부재 등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모든 세대를 점검하기 어려워, 점검 누락 사례 지속 발생 문제
- ✓ 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2년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의무화, 각 세대는 스스로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함
- ✓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점검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소방청은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 일시적 유예
- ✓ '25년 12월 1일부터 해당 유예기간 종료, 이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과태료 50만 원 부과
 - 세대별 자체점검을 제외한 소방시설 점검 인력 배치기준 등 다른 점검 의무 위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 한편, 주차 용도의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게끔 의무화하여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예방 추진
- ✓ 이번 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을 통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체계화 → 화재 초기 대응능력 및 자율 안전문화 확산,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감소 기대

Ⅲ. 입법 · 정책 현안

Ⅲ. 입법 · 정책 현안

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6.3.3.) / 하혜영 · 류영아

- ▲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 통과
- ▲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 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한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강화 취지
- ▲ 그간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사례는 있었으나, 광역 행정통합은 처음 시도
- ▲ 향후 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논의 집중 필요

□ 최근 광역 행정구역 통합 논의

- 최근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논의 급물살, 국회에서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 ('26.3.1.) 전남·광주 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7.1.출범)
-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조건: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①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②주민투표 실시
-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유형이 만들어짐
 - * [기존] 광역자치단체 17개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6도, 3특별자치도)
 - [변경] 16개 (1특별시, 1통합특별시, 5광역시, 1특별자치시, 5도, 3특별자치도)

□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주요 내용

《제22대 국회,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현황》

구분	전남·광주 행정구역 통합					구분	충남·대전 행정구역 통합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광주전남초광역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산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남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발의일)	정준호의원 ('25.12.24.)	한병도의원 ('26.2.3.)	용혜인의원 ('26.2.5.)	서왕진의원 ('26.2.5.)	신정훈의원 ('26.2.6.)	한병도의원 ('26.2.3.)	성일종의원 ('25.10.2.)	임미애의원 ('26.2.2.)	구자근의원 ('26.1.30.)	
본칙조문	3조	386조	269조	381조	18조	314조	296조	323조	335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조문구성	본칙 조문 408조, 부칙 조문 16조
통합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사무이양	중앙행정기관 권한 단계적 이양,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기초지자체 자치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등
자치행정	부시장 4명 확대 등 자치조직 특례, 공무원 인사 처우 보장 등 인사운영 특례, 시군구 지위 및 권한 특례 등
자치재정	예산 지원 및 특례,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지방채 발행 특례, 지방공기업 관리 특례, 공유재산 관리 특례, 세율 조정 특례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 특례, 의회 예산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노력,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부시장 등 인사청문회 등
주민참여	시민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 주민투표 특례
지역특례	제3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제1장 도시개발 (96조~149조), 제2장 산업활성화 (150조~400조)

□ **향후 과제 / 시사점**

① 국가 - 통합특별시 - 시군구 간의 기능 재설계

-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시·광역시 산하에 자치구를 두고, 도·특별자치도 산하에 시군을 두고 있으나, 통합특별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두는 형식

- 시군과 자치구 간에는 사무와 재정권한의 명백한 차이

* 예) 시군과 달리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직접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14개 분야 42개 업무에 달하며, 11개 지방세 세목 중 광역시는 9개를, 소관 자치구는 2개를 징수 / 광역도는 6개, 소관 시군은 5개 징수

-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설계 필요

② 집행부 견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역할 확대

- 막강한 권한을 지닌 단체장을 감시 / 견제할 기능 상대적으로 부족

- 지방의회 지위 및 다양성 강화 필요

* 의원·정책지원 인력 증원 등 조직·인력 제도 개선, 주민 참여제도 개편 필요

③ 지방재정 구조 개편과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광역시, 광역도, 시군, 자치구 간 지방세 구조 종합 검토 → 통합특별시 지방세 체계 확립 필요
- 명확한 통합특별시 소관 시·군·자치구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설정 필요
- 시군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구조 종합 검토 → 통합특별시 조정교부금 체계 확립 필요 (균형발전기금 신설 시 조정교부금과의 역할 정립 방안도 함께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에 관한 부분 미흡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④ 광역 간 통합 절차 및 특례 부여 법적 기준 마련

- 명확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 마련 필요
- * 현행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절차와 주요 특례 부여 기준 등을 정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음

⑤ 주민의사 수렴 등 숙의 민주주의 절차 보완

-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지역주민 의사 반영 가능토록 합리적 절차 마련 필요
-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경우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어야 함

②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 정비의 필요성]

※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6.2.10.]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김범주 입법조사관

- ▲ 지역간 광역 통합 추진을 위한 (약칭) '대전특별시법안', '전남광주특별시법안', '대구경북특별시법안' 등이 발의된 상황이고, 이에 입법이 완료될 경우 복수의 특별시가 설치됨.
-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서는 '서울특별시'라고만 적시된 경우가 있어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 특히,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 마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 시 지방교육재정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 검토 필요

□ 지방교육재정 수입 감소 우려

- (시도세 전출 의무 소멸 문제) 현행법상 도와 광역시는 시도세의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나, 통합하여 특별시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전출 의무가 사라짐
- (재정 감소 규모 추정) '26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 규정에 대한 미입법 상태가 유지될 경우, 3개 통합지역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에서 총 4,738억 규모의 시도세 전입금이 증발함
 - * (부수효과) 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감소, 이 재원이 일반회계 지방재원으로 이전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현상이 발생할 우려

《2026년 시도세 전입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도세 (총액의 3.6%)	광역시세 (총액의 5%)	합산액
충남대전	77,440	54,301	131,741
전남광주	63,934	67,460	131,394
경북대구	71,612	140,043	211,655
합 계			474,790

※ 자료: 2026년 각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바탕으로 재작성

□ 입법 시나리오별 검토

- ① **입법 공백유지(미입법)** 시도세 전입금을 전액 삭감해야 하므로 통합특별시 (3개 지역)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평균 16.9% 감소되어 지방교육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줌
- ② **통합특별시 총액의 4.3% 적용** 3개 통합특별시의 평균 시도세 전입금 1% 증가 및 전제 지자체 이전수입은 0.2% 증가하여 출범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임
※ (4.3% 적용) 기존 도(3.6%)와 광역시(5%)의 전출 비율의 중앙값 적용
- ③ **통합특별시 총액의 5% 적용** 기존 광역시 전출 기준 (5%)을 적용하면 도 단위는 전출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3개 통합특별시 평균 시도세 전입금이 17.4% 증가함 이는 최소한 광역시 기준과 보조를 맞춘다는데 의의가 있음
- ④ **전출비율 10% 적용** 현재 서울특별시 기준인 10%를 적용하면 3개 통합특별시 평균 시도세 전입금이 134.9% 대폭 증가함. 이는 발의된 통합특별시 법안 상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상 정합성을 고려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추가 고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 될 가능성이 있고 특별 교부금으로 인해 시도세 전입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 편성 한계 / 시사점

- (지방교육재정 위축) 행정통합과 특별시 출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기조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은 감소될 가능성이 큼
- (타 재원으로의 전용) 정부의 통합 지자체 재정 지원 (예: 최대 20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개편 논의로 인해 교육재정이 일반재정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음
- (법정주의 원칙) 교육재정의 기본사항은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법정주의 대상이므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입법정비의 시급성) 향후 교육 수요 대비 재정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합특별시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시도세 전입금 규정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주도적 역할) 교육재정을 국가재정 변화의 종속변수로 인식하지 않고 장기적, 종합적인 시각에서 능동적으로 제도 개편을 주도해야 함

IV. 해외 법제 동향

IV. 해외 법제 동향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6-3호 (통권 제291호),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26.3.3.]

□ 주요내용 (요약)

- 유럽, "유럽연합 내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 ((EU) 2022 / 2555)" (이하 「NIS2 지침」) 발효 ('23.1.16.~)
- 독일, 해당 지침에 따라 "NIS2 지침의 이행 및 연방정부의 정보보안 관리의 필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NIS2 지침 이행법」) 마련
- 동법을 통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BSIG)」 전면 개정, 「에너지법 (EnWG)」, 「통신법(TKG)」 등 개정
 - *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 '특별히 중요한 기관' 또는 '중요기관'으로 분류, 기업의 사이버보안 의무 강화

□ 법률 주요 내용

《「NIS1 지침」과 「NIS2 지침」 주요내용 비교》 (EU)

구 분	「NIS1 지침」(2016)	「NIS2 지침」(2022)
적용범위	에너지, 교통, 의료, 디지털 인프라 등 7개 핵심분야 한정	제조업, 폐기물 관리, 우주산업 등 추가하여 총 18개 분야 확장
수범자	핵심 서비스 운영자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필수기관 및 중요기관으로 재분류
의 무	국가별 상이	위험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공급망 보안 등 포괄적 사이버보안 의무사항 도입
보안요구사항	기본적인 위험관리 / 사고 보고	- 공급망 보안, 암호화, 취약점 관리 등 - 7가지 필수 요소 의무화
사고 보고	모호하고 국가별 기준 상이	- 24시간 이내 초기보고 - 72시간 이내 상세 후속 보고
책 임	IT 부서1 실무적 책임 위주	최고경영진의 개인적·법적 책임 명시
처 벌	국가별 상이, 상대적으로 낮음	최대 연간매출의 2% 또는 1천만 유로 징벌적 과징금

《 「NIS2 지침」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제7조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채택해야 할 의무
제8조~제10조	관할 국가기관 (제8조제1항), 사이버보안 중앙 연락 창구 (제8조제3항), 사이버 위기관리 기관 (제9조), 컴퓨터 비상 대응팀 (제10조)의 지정 또는 설립 의무
제20조 이하 / 제23조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관련 의무 (제20조 이하) 및 보고의무 (제23조) 해당 기업에 적용
제29조 이하	사이버보안 정보 교환에 관한 규정 및 의무
제31조 이하	사이버보안 감독 및 집행 의무

《 독일 「NIS2 지침 이행법」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확대 /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규제보다 적용범위 확대, 기관 중요도에 따라 '특별히 중요한 기관'과 '중요기관'으로 구분 • 섹터별로 다르지만, 보통 직원 50명 이상, 연 매출 1,000만 유로(약 173억 원) 이상의 기업 중 관련 산업군에 속하면 대상
강화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은 위험관리 의무를 지님(복구계획, 공급망 보안 등 포함) • 공급망 보안 의무는 공급망 전체의 보안 수준 평가, 계약상 보안 의무 부과
엄격한 사고보고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사고의 경우 24H 이내 조기 보고 • 사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 72H 이내 보고
경영진 책임 /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은 보안 조치 승인, 이행 감독, 위반 시 직접 책임 •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최대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 국내 현황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등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규정을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에 따로 두고 있음
-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보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통합 관리를 강조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EU의 지침과 독일의 입법례 참고 필요

□ 요약 / 결론

- 독일 「NIS2 지침 이행법」에 따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 「에너지법」 등 총 29개 법령 개정하였음
- 이에 따라 독일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이 강화
 - 기존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보다 적용 대상 확대, 중요도에 따라 특별히 중요한 기관과 중요기관으로 차등 규제
 - 사이버보안 관련 위험관리 의무 확대, 복구계획,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처리 및 취약성 관리 조치 포함
 -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함
 - 경영진 책임 강화 → 경영진은 보안 조치를 승인하고 이행을 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독일, 사이버보안에 관한 독자적 거버넌스 구축
 - *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이 사이버보안 관련 모든 문제 총괄, 「NIS2 지침 이행법」에 따라 BSI는 민관을 총괄, 중대한 보안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 권한 강화
- 우리나라는 사이버보안 문제를 공공부문은 국정원이, 민간부문은 과기부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분담
 - * 이외 방통위, 행안부, 금융위 등이 개별 영역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
- 독일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독자적 사이버보안청 (연방정보기술보안청, BSI)을 두고 정보 공유와 분석을 위한 특별조직으로 민관 총괄 → 우리나라도 향후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검토에 참고할 필요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조례에 공무원 대학등록금 지원 규정 가능 여부

[의견26-0031, 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 2026. 2. 11.]

□ 질의요지

조례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급하는 사무가 성남시의 자치사무인지에 대해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로서 성남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에서는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원하려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자녀 대학 입학 등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생활비의 일부를 지출하지 않게 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소속 공무원에게 변형된 보수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수당의 일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 국가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도 이러한 지원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학등록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수당”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법령에서 별다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공장사시설에 조화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조례 규정

[의견26-0006, 충북 청주시 / 회신일자: 2026.2.5.]

□ 질의요지

공공장사시설의 환경 유지 및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공공장사시설에 조화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장사시설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8조의2제1항)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는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제13조제2항제2호사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 사안의 경우, 장사법에는 공공장사시설에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장사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주시장이 공공장사시설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조화의 반입을 금지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장사시설에 조화의 반입 전체를 제한하는 경우 고인을 추모하려는 주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화를 공공장사시설에 방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아닌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것이 법 체계상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 외 별도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의원발의) 가능 여부

[의견26-0045, 부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2026. 2. 9.]

□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공무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 의견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단체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무원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지휘·감독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3. 10. 의견제시 21-0081 참조). 또한, 관련 법령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근로자에게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 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 등 법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자치사무로 검토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5. 11. 19. 의견제시 25-0395 참조)

이 사안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 또한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9. 7. 19. 의견제시 19-0195 참조)

VI.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VI.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1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 매각의 법령상 '중요재산 양도' 해당 여부 [법제처, 25-0974, 전북 부안군 / 회신일자: 2025. 12. 30.]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각주: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각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말하며(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제1호), 양도, 교환 또는 대여(제2호), 담보의 제공(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절차(각주: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의미함(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2021) 5p,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등 참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회답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이유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양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지방보조금법령에서 '양도'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지방보조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되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어느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일반적으로 양도는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가 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반드시 양도인의 의사에 의한 권리 등의 이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로서 강제경매의 결과 채무자는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고

매각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한 자가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각주: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2절 제2관, 제172조 등 참조),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은 권리 등이 남에게 넘어가는 양도의 한 태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점, 강제경매의 절차에 관해 규정한 「민사집행법」에서 ‘매수인’, ‘매각대금’ 등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경매는 매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례,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2021) 4p 등 참조), 결국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참조). 또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지방보조금이 그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바 (각주: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243592 판결례 참조),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중요재산 매각이 같은 항 제2호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고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강제경매절차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채무부담이라는 원인행위가 존재함에 따라 개시될 수 있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채무자로서 강제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는 경우 지방보조 사업자가 완전히 배제된 채 중요재산이 매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각주: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지방보조 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등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고(지방보조금법 제22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므로(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경매절차를 신뢰한 거래 상대방, 지방보조사업자의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 등은 부동산 등기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중요재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 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정보 범위

(법제처, 25-0971, 민원인 / 회신일자: 2025. 12. 24.)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는지?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종료 예정일이 지나거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종료 예정일이 지나거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등” 앞에 열거된 감사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예를 나열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준하는 정보의 경우에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 공익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각주: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정이유 참조),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각주: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본문에서의 감사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예시를 규정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위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감사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해

먼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성격의 것으로서,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여부의 결정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정보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다는 사유(각주: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례 참조)만으로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1991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당시(각주: 2012. 6. 28. 의안번호 제1900370호로 발의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사안에 따라 공개 가능 시점이 불명확하고 공개 가능 시점 통지 후 상황 변화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그 과정이 종료되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각주: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1누32851 판결례 참조)일 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종료 예정일이 지나거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해당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지방의회 의결 예산안 재의 요구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시점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준예산 집행 가능 여부
[법제처, 26-0066, 감사원 / 회신일자: 2026. 2. 12.]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제도는 지방행정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제도(각주: 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83 해석례 참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 특정 목적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에 따른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이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이 없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 상 준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있는 경우 그 재의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재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각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도 확정된 예산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지방의회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보다 더 엄격한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재의결할 필요도 없게 되는바, 그러한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확정된 예산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본다면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